

# 『(내맘) 적금』 요약 상품설명서

[기본정보] (2024.08.30 기준, 세전)

구 분	내 용					
상품특징	자동이체만으로 우대금리 제공~! 가입 목적에 따라 만기, 자동이체 주기, 가입 금액 등을 내맘대로 정하는 상품					
상품유형	적립식예금 (정	적립식예금 (정액적립식, 자유적립식)				
가입금액	1천원 이상 ~	1천원 이상 ~ 1천만원 이하 (원단위)				
적립한도	<ul> <li>자유적립식: 매월 1원 이상 ~ 1천만원 이하 (원단위)</li> <li>정액적립식: 매월 1천원 이상 ~ 1천만원 이하 (원단위)</li> </ul>					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(1인 다계좌 가늉)					
계약기간	6개월 이상 60	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(월단위 또는 일단위) ※ 정액적립식은 월단위만 가능				
	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적립방법 및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					
기본금리	계약기간	6개월~ 7개월 미만	7개월~ 13개월 미만	13개월~ 25개월 미만	25개월~ 37개월 미만	37개월~ 60개월
	자유적립	연 2.40%	연 2.50%	연 2.60%	연 2.70%	연 2.80%
	정액적립	연 2.65%	연 2.75%	연 2.90%	연 3.00%	연 3.10%
우대금리	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계약기간의 ½이상 월부금 자동이체실적 충족 시 연 0.50%					
일부해지	0	O 계약기간 내 2회 가능 (중도해지금리 적용)				
세제혜택	0	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				
예금담보대출	0	O 납입액의 100%까지 가능				
예금자보호	O 원금과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					

#### [유의사항]

※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(1599-1111,0,1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.

구 분	교 등름이전 시청본 교육센터(1399-1111,0,1) 또는 영합점으로 문의 미합니다. 내 용					
	예치기간	중도해지금리				
	- 1개월 미만	연 0.10%				
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				
		연 0,20%				
중도해지금리	<i>6</i> 개월 이상	가입(재예치)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욜 <sup>주1)</sup> x 경과욜 <sup>주2)</sup>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 (단위: 연, %)				
	<sup>주1)</sup> 차등율 : 기간(6개월 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					
	61월이상~91월미만경과시	91월이상~11개월미만경과시	11개월 이상 경과시			
	 60% 적용	70% 적용	90% 적용			
	<sup>주2)</sup> 경과율 : 경과일수 / 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 ※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 (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) 예) 중도해지금리가 1.564721%로 산출 시 1.564%로 적용					
만기 후 금리	• 1개월 이내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½ • 1개월 초과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¼					

※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시불필요한계좌를정리할수있으며,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이용시휴면계좌현황을 파악할수있습니다.



## 『(내맘) 적금』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중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(예시:유선 가입 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)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중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#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: 「(내맘) 적금」
- 상품특징: 자동이체만으로 우대금리 제공~!

가입 목적에 따라 만기, 자동이체 주기, 가입 금액 등을 내맘대로 정하는 상품

### 2 기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(중서)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 (2024.08.30기준, 세전)

							(===	00.30* [교, 시[교)
구 분	내 용							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(1인 다계좌 가늉)				상품	<b>유형</b> 적립식예금		계금
거래방법	신규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    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							
계약기간	6개월 이상 ~ 60개월 이하 (월단위 또는 일단위 지정) ※ 정액적립식은 월단위만 가능				적립	• 자유적립식 • 정액적립식		
가입금액	1천원 이상 ~	1천원 이상 ~ 1천만원 이하 (원단위)						
적립한도	자유적립식: 매월 1원 이상 ~ 1천만원 이하(원단위)     (계약기간 2/3 경과후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에는 경과전 기 적립한 잔액의 ½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)     정액적립식: 매월 1천원 이상 ~ 1천만원 이하(원단위)							
상품명지정	예금주명 또는 별칭을 상품명에 지정 가능 예) 김〇〇 적금, 여행 적금, 일일 적금 등							
이자지급방식	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해지 시 이자를 지급							
	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적립방법 및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							
기본금리	계약기간	<i>6</i> 개월~ 7개월 미만	7개월~ 13개월 미만	13개 25개월		25개· 37개월		37개월~ 60개월
	자유적립	연 2.40%	연 2.50%	연 2.	60%	연 2.7	70%	연 2.80%
	정액적립	연 2.65%	연 2.75%	연 2.	90%	연 3.0	00%	연 3.10%
우대금리 (연 0.50%) 기입(또는 재예치) 후 만기월 전월까지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계약기간의 ½이상 월부금 자동이체실적을 충족한 경우 연 0.50% 제공 ※ 월부금 자동이체 실적은 월별 1회 납입 횟수만 인정 ※ 우대금리는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만기해지 시 제공 (중도해지 시 미제공)								
우대금리 (쿠폰)	<ul> <li>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 제공</li> <li>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름</li> <li>금리우대쿠폰은 신규 가입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,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</li> </ul>							

	기간	중도하	지금리					
	1개월 미만	연 0,10%						
	 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						
		연0	,20%					
	<i>당</i> 이상		기본금리 x 차둥욜 <sup>주1)</sup> x 경과욜 <sup>주2)</sup> 0.20% 적용) (단위: 연, %)					
	<sup>주1)</sup> 차등율: 기간(6개월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							
	⊘1월이상∼911월미만경과시	9개월이상~11개월미만경과시	11개월 이상 경과시					
중도해지금리	60% 적용	70% 적용	90% 적용					
	주 <sup>2)</sup> 경과율: 경과일수 / 계약일수 (단 ※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지 예) 중도해지금리가 1.564721	리까지 적용 (소수점 넷째자리에서						
	연 0.10% 연 0.15%	기본금리 x 60% x 연 0.20% 경과일수 / 계약일수	기본금리 x 70% x 70% x 경과일수 / 계약일수					
	계약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1개월 만기일 ※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(원미만 절사)							
	1개월 이내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½     1개월 초과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¼							
만기 후 금리	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½ 지급 당시 해당기간 정기적금 기본금리 ¼							
271769								
	만기 후 1개월 이	 1개월 내	만기 후 1개월 초과					
만기 자동재예치 (총3회)	<ul> <li>이 예금을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하고 자동 재예치를 선택한 경우,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, 재예치 후 최소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 입출금통장으로 입금합니다.</li> <li>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 합니다. 다만,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자동재예치를 해제하는 등 기타 재예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</li> </ul>							
	자유적립식: 저축금마다 입금일:     지급	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	역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					
	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							
	[1회차] 납입금액 x 약정금리 x 이자계산일수(납입일~만기전일)/365							
이자계산방법	+ [2회차] 납입금액 x 약정금리 x 이자계산일수(납입일~만기전일)/365 + [3회차]							
	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	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, 입금건 하고 이를 입금총액에 더한 계약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은행은 계약금약	백을 만기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.					
일부해지	만기일 이전 총 2회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주3에 따라 일부해지가 가능하며, 정액적립식은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이 변경됩니다. (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) ※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							
	주3) 입금건별 균듕계산방식 : 일부여	배지하는 금액을 입금건별로 균듕하기	게 계산한 금액으로 출금하는 방식					
	정액적립식으로 가입한 계좌에 한해	만기 앞당김 지급이 가능합니다.(X						
만기앞당김지급	※ 만기앞당김지급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 1개월 전부터 신청 할수 있으며, 계약금액에서 만기앞당김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납입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납입지연이율로 게산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. - 단, 최초만기일이 지나고 이연만기일 전 해지시는 납입지연이율로 계산한 금액만 차감하여 지급 - 만기앞당김이율: 약정금리 + 연1.2%, 입금지연이율: 약정금리 + 연2.0%							

세제혜택 (개인, 개인사업자)	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)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.			
담보제공	은행의 슝낙을 받은 경우 질권설정이 가늉하며,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늉합니다.			
양도·명의변경	불가합니다.			
자동이체	적립한도 이내에서 자둥이체 등록 가능합니다. ※ 자둥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며,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			
연계·제휴서비스	해당사항없음			
휴면예금 및 출연	<ul> <li>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</li> </ul>			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<ul> <li>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일부해지 포함)</li> <li>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.</li> </ul>			
위법계약해지권	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듕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			
자료열람요구권	<ul> <li>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</li> <li>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		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1599-1111,0,1),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 <u>www.kebhana.com</u> )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 금융민원센터( <u>http://www.fcsc.kr</u> 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	
예금자보호여부	해당 예금보한권사 보호금융상품 1억생자교도당반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

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(1599-1111,0,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부록 :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설 명
압류	•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•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•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 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<ul> <li>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</li> <li>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</li> </ul>
경과기간	•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